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-01-0031호

2025년 「D-유니콘 프로젝트」 유망기업 모집공고

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**선택과 집중**의 **맞춤형 스케일업 확대 지원**으로 유니콘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년 대전형 유니콘 유망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3월 7일

(재)대전테크노파크 원장

1 모집 개요

□ **사업목적**

○ 대전 내 성장 가능성 높은 **유망 기업**을 **선별, 전방위적 지원**을 통해 **스케일업** 및 **글로벌 시장 진출** 촉진으로 유니콘 기업의 탄생 유도

□ **지원규모 :** 10개사 이내 (최종 선정기업 기준)

□ **지원대상 :** 공고마감일 기준, ①대전지역 내 본사 소재 ②업력 3년 이상 중소·벤처기업 중 5년 이내 투자유치 실적이 누적 5억 원 이상인 ③비상장기업

① **선정 이후 타 지역 본사 이전 시 '지정 해제'**될 수 있음

② 등기부상 회사성립연월일부터 공고마감일까지 산정

③ **코넥스 상장기업 신청 가능**

□ **지원방식 : 공통지원**(10개사 이내)

2 지원 내용

구 분	지원사업	사업내용	지원기관	지원규모
공통 지원	성장도약 자금지원	○ 스케일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	대전테크노파크	10개사 이내
	성장인프라 네트워크	○ 기업-투자사 연계 투자유치 지원	벤처캐피털타운	
		○ 기업 내부역량강화 지원 ○ 글로벌 진출 지원(해외 바이어, 투자자 등 발굴 및 네트워킹 지원)	대덕이노폴리스 벤처협회	

※ 성장도약자금지원(기업 직접수행), 성장인프라 네트워크(지원기관 간접지원)

□ 세부내용

○ **(성장도약자금)** 기업의 자율성을 부여한 **맞춤형 성장지원**으로 스케일업을 위한 **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**

- **(지원규모)** 10개사 이내 (최종 선정기업 기준)
- **(지원금액)** 총 700백만원 예산 범위 내 차등 지원 (기업당 70백만원 내외)

  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성장도약자금 차등 지원
- **(민간부담금)** 지원금의 **30% 이상 현금 매칭**

  예) 성장도약자금 70백만원 지원 시, 민간부담금은 70백만원의 30% 이상 현금 매칭

  ※ VAT(부가가치세)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선정기업 부담
- **(지원항목)**

지원항목		지원내용
기술 지원	① 시제품 제작	- 시제품 제작(제품설계 및 개발, 제작, 재료구입 등)
	② 제품고급화	- 제품 고도화(상용화 제품 성능 개선 및 기능 추가), 사용자 경험(UX) 및 인터페이스(UI) 개선 등
	③ 지식재산권	- 국내외 특허・상표, 실용신안, 디자인 출원・등록비용
	④ 인증지원	- 제품 및 서비스의 신뢰성・성능・품질・보안 인증, 시험분석 등(국내외) ※ 사업기간 내 결과 취득 가능한 경우만 신청
	⑤ 기술이전	- 국내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(거래유형 : 기술양도, 전용실시, 통상실시 등)

지원항목		지원내용
사업화 지원	⑥ 컨설팅	- 기술・경영・연구개발・마케팅・사업화 전략・법률 자문 등
	⑦ 디자인	- 제품 및 패키지(포장) 디자인, 제품 및 서비스의 UI/UX 디자인 등
	⑧ 브랜드개발개선	- CI, BI 리뉴얼 및 신규 개발 등
	⑨ 시장조사	- 해외시장 조사 및 분석
	⑩ 홍보	- 제품 홍보물 제작(브로슈어, 영상, 홈페이지 등) ※ 기존 홍보물에 대한 추가 인쇄비 제외

※ 지원 항목은 **기술지원 1개 이상, 사업화지원 1개 이상 선택이 필수**이며,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평가 시 조정 될 수 있음

※ **회계정산수수료는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편성(1,000천원)**

3 선정평가

□ **평가절차 :** 단계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

평가단계			평가내용
1차		요건심사	·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· 투자유치금액 및 업력 등 요건검토
2차		서류평가	· 사업계획서 검토, 현장실사(필요시) 등 기술성·사업성 평가
3차		발표평가	· 성장가능성, 시장확장성 등 사업계획서 중심 발표평가
최종 선정(10개사 이내)			· 고득점 순으로 유망기업 최종 선정

□ 1차 요건심사

○ **(신청요건)**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(누락여부 등) 검토

❶ 투자실적, ❷ 업력, ❸ 채무불이행 여부, ❹ 국세·지방세 체납 여부, ❺ 정부,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제한 여부, ❻ 업종, ❼ 휴폐업 여부

○ **(투자유치실적)** 공고마감일까지 **5년 이내의 투자계약 및 투자금 납입 완료된 누적 금액 5억 원 이상** 증빙자료 확인

○ **(투자실적 인정범위)** 벤처투자기관의 인정범위는 [9쪽] 참조

□ **2차 서류평가 :** 1차 요건심사 통과기업 대상

○ **(내 용)**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실사(필요시) 등 기술·사업성 평가

○ **(평가기준안)**

구분(배점)	평가기준	구분(배점)	평가기준
내부역량 (10)	기술·사업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CEO 및 참여인력의 역량	기술성 (30)	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의 기술개발 환경, 실적,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등
시장성 (30)	핵심기술의 제품 경쟁력, 시장성장성, 차별화전략 등	사업성 (30)	유니콘 성장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서의 수행 가능성 등

□ **3차 발표평가 :** 2차 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

○ **(내 용)** 발표를 통한 D-유니콘 기업으로의 사업계획의 적정성, 성장가능성, 시장확장성 등 심층 평가

○ **(평가기준안)**

구분(배점)	평가기준
D-유니콘 사업계획의 적정성(20)	① D-유니콘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사업 목표의 명확성 (5)
	② 사업내용 및 실행 가능성 (5)
	③ 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추진 방향의 적정성 (5)
	④ 사업비 편성 및 활용 용도의 적정성 (5)
성장가능성 (40)	⑤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통한 성장 가능성 (10)
	⑥ 기술·사업모델의 고도화, 사업 확장 등을 통한 기업 내부적 성장 가능성 (10)
	⑦ 국내·외 후속 투자유치 가능성 (20)
시장확장성 (40)	⑧ 시장 규모의 성장(확대) 가능성 (20)
	⑨ 글로벌시장에서 선도·지배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 (10)
	⑩ 창출될 신산업·신시장이 글로벌 시장 및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력 (10)

□ **최종 선정**

○ **(최종 선정)** 3차 평가의 **고득점 순으로 10개사 이내 최종 선정**

※ 평가 결과 기준 미달 기업 지원 제외

○ **(동점자 순위)** 합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성장가능성, 시장확장성, 사업계획의 적정성 순으로 항목별 점수가 높은 순서 기준

4 사업 추진일정

❶ 유망기업 모집공고	❷ 신청/접수	❸ 선정평가(1~3차)
'25.3.7.~27.	'25.3.21.~27.	'25.4.
대전테크노파크	대전테크노파크	선정평가위원회

❹ 협약체결	❺ 사업수행	❻ 최종평가 및 성과조사
'25.5. 중	협약일~'25.11.11.	'25.11.~12.
선정기업↔대전TP	선정기업	평가위원회 및 대전TP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 신청방법

○ **(공고기간)** 2025. 3. 7.(금) ~ 3. 27.(목)

○ **(신청·접수기간)** 2025. 3. 21.(금) ~ 3. 27.(목) 18:00 까지

○ **(접수방법)** 대전기업정보포털(www.dip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- 온라인 신청 절차: 기업 회원가입(기업인증필요) → 온라인 접수(과제접수) 해당란 입력 → 제출서류 첨부* 후 등록 완료 → '최종신청' 클릭 → 온라인 접수증 출력하여 보관

*** 제출서류 순서대로 압축하여 1개의 압축파일로 첨부**

※ **원클릭 제출 "예"로 신청**(신청서 원본은 선정 후 별도 제출)

< 유의사항(필독) >

* **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 및 기업인증 등 추가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입력 완료 권장**

* **온라인 신청만 가능**(접수기간 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를 e-mail 또는 오프라인 신청 불가)

* 온라인 등록 시 전체 용량이 100MB 초과되는 경우 업로드 불가

*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, 제출서류 미비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
6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

○ **(지원제외 사항)**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※ 이때,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

채무 불이행	① 기업의 부도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함)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④ 파산·회생절차·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함) **< 관련 문의처 >** ◇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: 신용회복위원회(www.ccrs.or.kr, ☎1600-5500) 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(보증) 및 재기지원 보증: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(www.rechallenge.or.kr, ☎042-281-3720, 3755)
부실위험	⑤ 현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,0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% 이상인 기업(단,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, 신용평가등급 'BBB'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) * 부채비율 = (부채총계/자기자본) × 100 ⑥ 자기자본 전액 잠식 ※ 단, ⑤, ⑥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,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, 최근 년도 감사 의견이 "미반영" 또는 "부적정"
기타사항	⑧ 부실징후가 있거나 유니콘 기업 육성 취지에 부적합한 경우 ⑨ 국가연구개발사업,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기업, 대표자

7 제출서류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제출서류</th><th>비고</th><th>필수여부</th></tr>
<tr><td>1</td><td>2025년도「D-유니콘 프로젝트」사업계획서(양식1~5 포함)
- [양식1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[양식2] 투자유치내역확인서
- [양식3] 주주명부
- [양식4] 민간부담금 참여의사 확약서
- [양식5]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</td><td>첨부양식
(원본)</td><td rowspan="10">필수</td></tr>
<tr><td>2</td><td>투자계약서(최근 5년 이내)
* 투자유치내역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(사본) 일체
* 투자자 구분에 따른 추가 서류 필수 제출
<table>
<tr><th>투자자 구분</th><th>제출서류</th></tr>
<tr><td>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
신기술사업금융업자
신기술창업전문회사
기술지주회사
사모집합투자기구</td><td>사업자등록증</td></tr>
<tr><td>투자조합</td><td>고유번호증</td></tr>
<tr><td>개인(엔젤투자자)</td><td>투자확인서(한국엔젤투자협회 발급)</td></tr>
<tr><td>창업기획자</td><td>창업기획자 등록증</td></tr>
<tr><td>외국투자회사</td><td>Certification of Registration</td></tr>
</table></td><td>투자자,
투자금액,
투자
계약체결일
확인 필수
(사본 가능 -
원본대조필
날인)</td></tr>
<tr><td>3</td><td>신청기업 현황조사표 (※ 엑셀 자료 이메일 제출)</td><td>첨부양식
(엑셀)</td></tr>
<tr><td>4</td><td>사업자 등록증</td><td rowspan="3">대전기업정보
포털 '원클릭
서류 제출'
시 자동
업로드</td></tr>
<tr><td>5</td><td>납세증명서(국세, 지방세) (유효기간 내)</td></tr>
<tr><td>6</td><td>4대보험 완납증명서 (유효기간 내)</td></tr>
<tr><td>7</td><td>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舊. 법인등기부등본)
* 말소사항 포함, 전체 페이지 제출</td><td rowspan="3">공고일 이후
발급분
(원본)</td></tr>
<tr><td>8</td><td>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
(전년도말('24.12.31.) 기준, 전월말('25.2.28.) 기준)</td></tr>
<tr><td>9</td><td>최근 3년분('22, '23, '24년) 재무제표
* '22년, '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은 '원클릭 서류 제출' 시 자동 업로드
* '24년 결산 이전인 기업의 경우 '21~'23년 자료 제출 및 선정 이후 보완 제출</td></tr>
</table>

※ 발표평가 대상자는 PPT 발표 자료 별도 제출 (대상자에 한해 추후 안내)

※ 평가 과정 중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요청 가능.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누락 시 신청 접수 대상에서 제외

8 기타 유의사항

○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다음의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-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-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
-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,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
○ 최종 선정기업은 대전테크노파크가 정한 기한 내에 성장도약 자부담금 (현금)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협약체결이 가능합니다.

○ 최종 선정기업은 대전광역시,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요구(성과조사 등)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.
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○ 요건검토 및 매 평가과정을 비롯하여 협약체결 전후에도 요건부적합이 확인될 시 요건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9 문의처

구분	담당부서	담당자	문의처
사업 관련 문의	기업지원단	유혜진 책임	042-930-4854 / hyejin24@djtp.or.kr
DIPS 대전기업정보포털 시스템 이용 문의 (서류제출 등)	운영지원실 정보화팀		1) 042-251-2872 2) DIPS 대전기업정보포털 → 소식 → Q&A

10 벤처투자기관 기준

□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

1.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
①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0호에 따른 **벤처투자회사**
②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1호에 따른 **벤처투자조합**
③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**신기술사업금융업자**
④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**신기술사업투자조합**
⑥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66조에 따른 **한국벤처투자**
⑦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**
⑧ 투자실적, 경력, 자격요건 등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**

2.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자
① **신기술창업전문회사**
②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8호에 따른 **개인투자조합**
③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9호에 따른 **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**
④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**한국산업은행**
⑤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**중소기업은행**
⑥ 「은행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**은행**
⑦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**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**
⑧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117조의10에 따라 **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**
⑨ 「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제13조제1항에 따른 **농식품투자조합**
⑩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8호에 따른 **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**
⑪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0호에 따른 **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**
⑫ **기술보증기금**
⑬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**신용보증기금**
⑭ 13의2.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8조제1항에 따른 **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**
⑮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**외국투자회사**

3.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의3제2항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**외국투자회사***
* 외국투자회사: 1)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날 현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관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외국투자회사
2)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50조제1항에 따라 결성된 국내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
3)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날 현재 해외벤처캐피탈협회 소속 투자회사

4.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**투자자산운용사, 증권사**

※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**특수관계인과 개인투자자(온라인 소액 투자자 포함) 투자실적 제외**